

#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노옹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3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3.

발의자 : 노옹래 · 이상민 · 민홍철

김민기 · 맹성규 · 기동민

이후삼 · 김정호 · 이철희

신창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·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(이하 “백도어”라 함)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통신장비 보안사고의 우려가 높음.

현행법상 금지되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수 있음.

이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·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).

##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전자적 침해행위”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해킹, 컴퓨터바이러스, 논리·메일폭탄,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

나. 정상적인 보호·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행위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전자적 침해행위”라 함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, 컴퓨터바이러스, 논리·메일폭탄,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전자적 침해행위”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가. 해킹, 컴퓨터바이러스, 논리·메일폭탄,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</p> <p>나. 정상적인 보호·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행위</p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